



산업통상자원부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

<http://www.motie.go.kr>

2015년 5월 6일(수) 14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산업부 투자정책과 김용채 과장(044-203-4070), 박헌진 사무관(044-203-4074)

외국인투자를 가로막는 갈라파고스 규제 푼다

-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 구축을 위한 “외국인투자 관련 규제혁신 방안” 발표 -

- 항공정비업 외국인투자 지분제한 철폐 등 외국인투자 개방업종 확대
- 화장품업 등록시 정신질환진단서 제출의무 폐지 등 업종별 “대못” 규제 제거
- 환경·노동·세무 등 경영여건 관련 규제 정책과정에 외투기업 참여 확대

☞ 외국인 투자관련 규제 혁신으로 '17년 FDI 300억\$ 시대를 개막

□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.6일(수) 14시 청와대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“외국인투자 관련 규제혁신 방안”을 확정·발표하였다.

□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외투기업간담회 등 다양한 규제개선 노력으로 2014년 사상 최대 투자유치 190억불 달성 등 가시적 성과가 있었으나,

○ 외투기업은 한중 FTA로 한국시장의 중요성이 증가하였다고 인식하면서도, 환경·노동 규제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었다고 평가*하고 있어 그간의 노력을 뛰어 넘는 혁신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.

* '15.4월 주한상의 설문조사 결과, 외투기업들은 한국시장의 중요성 증가(50.5%), 투자확대 계획(49.5%), 기업활동 여건 악화(52.2%) 평가

<외국인투자 관련 규제개선 노력 및 성과>

◇ VIP 주재 간담회('13.4, '14.1), 정부 주관 간담회(20여회),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애로 해소 활동(930여건) 등을 통해 30여건의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 및 제도개선 추진

- * (규제철폐) 국내지주회사의 손자회사와 외투기업간 합작투자 허용, 외투지역내 공장면적/공장부지 비율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완화 등
- * (제도개선) 글로벌기업 R&D센터와 헤드쿼터 인정제도 및 세제지원 신설, 중소기업 여부 판단시 적용 환율기준 합리화(직전년도 → 5년평균) 등

- 특히 FTA 플랫폼을 투자유치의 好機로 활용하기 위해 외투기업 설문조사,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, 3가지 유형의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와 구체적 규제혁신전략을 마련하였다.

<외국인투자 규제유형과 추진전략>



- 이러한 추진전략에 따라 40여개 개선과제를 도출(참고2)하였고, 주요 과제 및 사례는 다음과 같다.

1

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외투규제 혁신

- ◇ 해외의 자본·인력·기술 등 핵심 투자요소가 자유롭게 유입·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

□ 항공정비업 등 외국인투자 개방 업종 확대

- 항공정비업 관련 글로벌 기업의 국내 지역공항 등과 연계한 투자 수요가 계속 있었으나, 항공법에서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를 50% 미만으로 제한하여 투자를 철회한 사례가 있었다.

* (사례) 싱가포르 A 기업의 경우 인천에 민항기 MRO 사업 투자를 추진하였으나, 항공기 정비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 지분 제한(50%미만)으로 투자 계획 철회

- ☞ 항공 정비업(MRO) 분야 외투기업의 국내 투자제한을 철폐하여 지역공항에 글로벌 전문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.
- ☞ 향후 29개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의 개방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.

□ **외투기업의 외국인 고용 비율 확대**

-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 비율을 **내국인 고용 총수의 20% 이내로 제한***하고 있어 소규모·초기 외투기업의 경우 인력확보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다.

* 例) 내국인 고용이 10명이면 외국인 고용은 2명까지만 허용

* 법무부 특정활동 E-7 체류자격 관리지침(법무부)

- ☞ 창업초기 소규모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**2년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비율 적용을 유예**하여 인력 수급 애로를 해소하고, 사업 정상화 이후에는 내국인 고용 창출을 유도한다.

□ **영리형 훈련기관 강사 비자 발급 허용**

- 디자인, S/W, 뷰티 등 전문서비스에 대한 국내 교육수요 증가로 해외기술전문학교(아카데미)가 국내 진출을 계속 타진*하고 있으나, 외국의 고급인력이 전문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국내에 체류하는 것은 불가능** 하였다.

** (例) 디자인: 이태리 B社, 뷰티·요리: 영국 C社 등 유치추진 중

** 외국인 강사가 국내 체류할 수 있는 비자는 대학초빙강사(E-1) 및 어학강사(E-2)만 가능하여 외국 기술전문학교는 국내 대학교와 비영리 협업 형태로 운영 중

- ☞ 강의를 목적으로 한 **영리형 훈련기관 강사에 대한 국내 체류 비자발급을 허용**하여 해외 전문기술학교 유치와 전문서비스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, 내국인들도 외국전문가 교육을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.

□ **외국인투자 절차 간소화**

- **외국인투자 절차를 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유사성격의 복수 신고조항 등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항이 다수 존재**하여 외투기업은 절차이행에 따라 상당한 시간적·비용적 부담을 감수하였다.

☞ 외국인투자 변경신고 등 5건의 불필요한 신고 절차를 폐지*하고, 개별법의 일괄처리 민원사무 대상을 확대**하는 등 전면적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여 행정업무 축소를 통한 적기 투자를 지원한다.

* (폐지 예정 신고절차) 외국인투자변경신고, 주식양도신고, 등록말소, 기술 도입계약 신고, 자본재처분 신고 폐지·정비

* (일괄처리 가능 민원사무) 現 148개 → 改 192개(44개 추가)

2

맞춤형 규제개선을 통한 유망산업 유치

◇ 한·중 FTA 등을 통해 투자유치가 유망한 10여개 업종 중 규제개혁이 필요한 화장품 등 5개 업종에 대한 맞춤형 규제개선 추진

□ 화장품업 등록시 정신질환진단서 제출의무 폐지

○ 화장품 분야 외투기업들은 화장품업 등록시 한국 의사가 발급한 대표이사 정신질환·마약중독 진단서 제출 의무*로 해외 체류 대표이사의 진단서 제출이 어려워 투자를 보류**하는 경우가 있었다.

* (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3조) 정신질환·마약중독 진단서 제출 의무 규정

** 스페인 화장품업 진출 예정 기업 D社は 정신질환·마약중독 진단서 제출 요구로 투자 계획 보류

☞ 외투기업이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 시 대표이사 정신질환·마약중독 진단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외투기업의 화장품 사업 투자 애로를 해소한다.

□ 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

○ 화장품법(제 2조)은 기능성화장품을 미백, 주름개선, 자외선차단 3개 분야로 한정*하고 있어 화장품 외투기업은 기능성 화장품 분야 신제품 개발 및 프리미엄 상품화에 애로가 있었다.

☞ 기능성화장품의 대상 범위를 아토피 등의 분야도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아시아인에 특화된 화장품 개발을 지원한다.

* 아토피 전용 화장품, 슬리밍 화장품, 아로마테라피 등 자연성화장품, 각질연화 기능성화장품 등 상품 다양화 필요

□ 동물의약품 CMO 방식 생산 허용

○ 일반 의약품 생산에서 인정하고 있는 CMO* 방식을 동물 의약품 생산에서는 금지**함에 따라 기업은 자체 생산 시설을 갖추 수 밖에 없어 추가 비용이 소요되었다.

* CMO(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) : 계약생산대행

**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4조

☞ 동물의약품의 경우에도 CMO 방식을 허용하여 외투기업이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및 사업화에 전념함으로써 대형 의약품 전문연구개발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□ 소재부품 전용 외투단지의 입주업종 확대

○ 구미, 포항 등 소재부품 전용단지는 소재부품 이외 협력 외투 기업의 입주가 불가하여 소재부품 외투기업 자체도 입주를 기피하였다.

* 반도체부품 외투기업 E社は 연관 디스플레이 업체가 소재부품 전용 외투단지에 입주하지 않아 납품을 위한 추가 물류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투자가 지연

☞ 소재부품 전용 외투단지의 입주 업종을 여타 분야로 확대하여, 밸류체인을 보완할 수 있는 외투기업의 단지 입주 및 주변산업과의 연계사업 활성화를 촉진한다.

◇ 외투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인 환경·노동 등 경영여건 관련 규제는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외투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해 해소

□ 환경·노동·세무조사 등 경영여건 관련 규제개선 및 소통강화

- 화평법 관련 기업 영업비밀 보호 강화,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, 과세조정 신청 기한 확대 등을 통해 현안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,
- 환경정책협의를 위한 산업계 포럼, 노무관리지원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외투기업과의 협의채널을 강화한다.

□ 정책결정과정에 외투기업의 참여 확대

- 규제개혁위원회에 외투기업 의견제시 절차 마련, 외투기업 음부즈만의 애로발굴 및 정책건의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외투기업의 의견이 정책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.

□ 윤장관은 “이번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한국을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함으로써 ‘17년 투자유치 300억불 실현, 세계 10위권대 FDI 강국 도약을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- 향후 산업부를 중심으로 금년 내 개선완료를 목표로 추진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, 정부-주한외국상의-외투기업으로 실무 추진단을 구성하여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.

【기대 효과】

- ▶ (FDI 규모) ‘14년 190억불 → ‘17년 300억불
- ▶ (FDI 순위) ‘14년 25위 → ‘17년 10위권대

[별첨] 「외국인투자 관련 규제혁신 방안」 보고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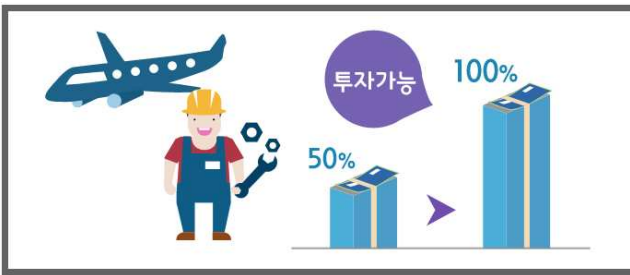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박헌진 사무관(☎ 044-203-407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

❖ 외국인투자관련 규제혁신 ❖

① 항공정비업 등에 대해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.



사례 · 개선사항 등

- ✓ 투자지분 제한규정 철폐로 외국기업이 지역공항 등 국내 항공 MRO사업에 100% 투자 가능

* 항공 MRO관련 외자기업 투자지분 제한 철폐

② 소규모 외투기업의 외국인 고용비율을 확대하여 인력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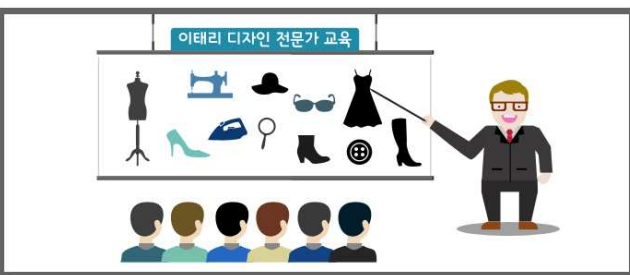
사례 · 개선사항 등

- ✓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고용 비율 제한을 창업초기 소규모 외투기업에 대하여 2년간 유예

* 외국인고용비율 : 내국인 고용총수의 20% 이내



③ 이태리 패션디자인 전문가의 교육 등을 한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.



사례 · 개선사항 등

- ✓ 이태리 패션디자이너, 영국 뷰티전문가가 국내에 체류하며 자유롭게 강의

* 강의목적 기술전문학교 해외 강사진에 대한 국내체류 비자발급 허용

④ 외국인투자변경신고 등 중복절차 폐지로 서류부담이 줄어듭니다.

사례 · 개선사항 등

- ✓ 외촉법 · 령의 개정으로 타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통합 · 폐지하여 전면적 투자절차 간소화 추진



- ⑤ 화장품제조판매업 등록시 정신질환진단서 제출의무를 폐지하고,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 확대 및 수출품의 기능성 심사를 면제합니다.

사례 · 개선사항 등

- ✓ 화장품업 등록시 정신질환자 · 마약 중독자 여부 진단서 제출의무 폐지
- ✓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 및 수출전용 품의 기능성심사 면제



- ⑥ 동물의약품의 CMO(계약생산대행) 방식 생산을 허용하여 개발자는 연구 역량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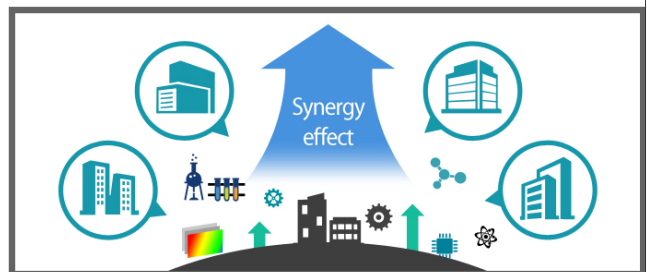
사례 · 개선사항 등

- ✓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기존 불가하던 동물의약품의 CMO 방식 생산을 가능하도록 개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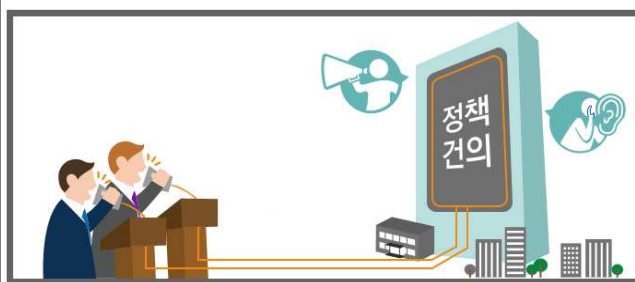
- ⑦ 소재부품 전용 외투 단지의 입주업종을 확대합니다.

사례 · 개선사항 등

- ✓ 소재부품 전용 외투단지에 벨류체인 보완기업 입수도 허용하여 관련 산업 시너지 강화



- ⑧ 정책결정과정에 외투기업의 참여가 대폭 확대됩니다.



사례 · 개선사항 등

- ✓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한 외투기업 의견 제시 절차를 마련하고, 투자자문단 참여 확대로 옴부즈만 정책건의 기능 강화

